

전기용품안전인증 Q & A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 (편집자주)

Q LED등기구를 일반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실내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.

사양은 AC220V에 60Hz 50Watt ~ 80Watt입니다. 이 경우 등기구와 등기구 내부의 전원 변환장치가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인지 여부와 인증대상 품목일 경우 해당 시험시의 규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합니다.

A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명기구(직류전원장치와 LED 모듈이 내장된 구조의 제품)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며, 동 안전인증대상 조명기구는 가정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조명기구를 의미함을 알려 드립니다.

아울러, LED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K60598-1(조명기구의 일반요구사항), K60598-2-1(고정형 조명기구), K60598-2-4(휴대형 조명기구)등 3종이 있으며, 안전기준 열람방법은 협회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 CD를 제작하여 판매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(개별 규격별 구입 가능)(문의처 : TEL. 02-890-8300 / FAX. 02-890-8309)

Q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.

주서믹서 또는 후드믹서 제품 안전인증신청시 정격입력 시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정격입력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.

A 귀하께서 문의하신 후드믹서의 정격입력 시험기준은 K 60335-1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제1부 : 일반요구사항)의 10항에 따라 "정격입력이 25W초과 300W이하인 제품은 +20%이내의 허용차를 요구하며, 300W를 초과하는 제품은 +15%이내 또는 60W중 더 큰쪽"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정격입력 시험은 K 60335-2-14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-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)의 2.2.9.6항에 따라 "용기부피 1/2의 당근(크기15mm이하)과 1/3의 물을 혼합하여 용기에 표시된 최대표시까지 채워 넣고, 통상 사용 상태로 동작"시키며 정격입력을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.

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내용은 상기 안전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